

인천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가합59524(본소), 2016가합51282(반소) 판결 [하도급대금
청구의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건양기업

변론 종결 2017. 4. 4.

판결 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944,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340,581,8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가구를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가구에 하자가 있어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공신타결일인 2015. 3. 31.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하여 324,760,000원 상당의 노임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추가공사비는 38,800,000원이다.

3) 피고와 위 공사를 타결하기로 한 2015. 3. 31. 당시의 기성고율은 85%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453,000,10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93,940,000원을 직불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40,581,881원[={기성공사비 493,000,000원(약정 공사비 580,000,000원 × 기성고율 0.85%) + 공신타결에 따른 추가공사비 324,760,000원 + 약정에 의한 추가공사비 38,800,000원} - 기지급 공사비 546,940,108원 + 부가가치세 30,961,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의 사이에 순천시 C 신축아파트 일반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약정 준공일에 완료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명목으로 직접 피고로부터

453,000,10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93,940,000원을 직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비 324,76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가구에 하자가 있어 약정 준공기일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가구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요구로 38,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요구로 38,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7. 1. 27. 이 사건 공사 중 59Type 현관경, 드레스 문틀 상부 등을 추가로 공사하기로 하고, 그 추가 공사비를 1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넘는 추가공사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요구로 위 10,000,000원을 넘는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명목으로 직접 피고로부터 453,000,10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93,940,000원을 직불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546,940,10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공사대금 493,000,000원에 위 추가공사비 10,000,000원을 합한 50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46,940,108원에 위 추가공사비 1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9. 26.부터 2015. 3. 6.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4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142,000,000원이나 피고는 원고의 2015. 4. 23. 직불동의에 따라 2015. 4.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78,585,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4,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잔여공사 마감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2015. 3. 2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담당한 D에게 98,68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위 142,000,000을 초과하여 합계 181,26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142,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39,265,000원(= 181,265,000원 -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한 공사에는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공사비 134,679,480원, 자재비 103,000,000원 등 합계 237,679,4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237,67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기찬

판사심우승

판사김보경